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75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개호・김동아

김성환 • 문정복 • 김문수

복기왕 • 조계원 • 임오경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

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.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·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하지만,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·세대수·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.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, 행정사무감사, 예산 심의,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,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

이에,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

를 위한 것입니다(안 제4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·도의회의원 정수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	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
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	력) ①
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	
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	
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	
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	
있다. <단서 신설>	<u>다만, 시·도의회에 두는</u>
	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
	•도의회의원 정수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